

518억 규모 평창올림픽 공사 외국기업에 뺏길 위기

평창조직위 전기공사 공고 국내 관련기업 한곳도 참여 못해 '외국기업 배불리기 방조' 논란
다국적 협력체 선정이 유력 지역업체 "시공경험·능력 의심... 국민 혈세 외국 유출 막아야"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전기공사를 외국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 대회 전력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518억원 규모의 임시전력 부문 공식 후원사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따르면 이달 초 제안서 접수 및 평가가 실시됐는데 이 사업에는 다국적기업인 A업체와 국내 통신그룹인 대기업 K사 컨소시엄 등 2개의 공동수급체가 참여했다. 나머지 다른 컨소시엄에는 국내 S업체가 포함됐다. 사실상 실적

이 우수한 다국적기업 A업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에는 지역업체는 물론 국내 전기공사 관련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기공사업체는 이에 대해 국내에

서 진행되는 대형사업을 외국기업이 독차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공사수행능력이 있지만 해외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쌓은 A업체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A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대기업인 K사는 1년간 전기공사 실적이 국내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공사진행에서도 역할이 제한적으로 다국적기업의 배를 불리

는 데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역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인 K사가 순수 자사의 시공 경험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동계올림픽 공사가 외국기업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지역업체는 물론 국내 전기공사업체의 좌절감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근기자 fax4939@kwnews.co.kr

아하! 그렇구나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보증금 채권의 상계 여부

사건 개요

발주자인 원고는 ○○건설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다. 원고는 1996년 6월경부터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으나 강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같은 해 9월3일에 이르러서야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다. ○○건설은 그때까지 본 공사 착수가 불가능했던 데다 같은 날 부도가 났다. 원고는 그 다음날 원고 직영으로 본 공사를 개시해 버팀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같은 달 5일 ○○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건설에 대해 본 공사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1월24일까지 직영으로 본 공사를 계속했다. 이후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에게 ○○건설이 교부한 계약이행보증서에 기재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계약보증금 채권에 대한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 검토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

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

이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건설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다른 공사 잔대금채권 7547만1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민법 제434조에 의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따라서 보증기관은 건설업자가 부도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해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청구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당해 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건설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를 해야 한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